

의안번호	2201474
의 퇴 인	권영진 의원
회 답 일	2024. 7. 18.
추계번호	24B173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제1항 (경비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과학관에 대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재량규정
2	안 제17조제2항 (경비의 보조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관할 구역 안의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7조제1항 (경비의 보조 등)	미대상 - 현행법에 따른 과학관의 구분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으로 나뉨¹⁾ - 현행법에 따른 등록과학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공립·사립과학관을 말하는데²⁾, 안 제17조제1항은 등록과학관의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규정을 삭제하고 사립과학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임 - 개정안은 제17조제2항에서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과학관의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규정을 삭제할 경우 국립과학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지게 됨 - 국립과학관은 운영 주체가 국가이므로, 그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이 삭제되어도 국가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안 제17조제2항 (경비의 보조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경비의 보조 등(안 제17조제2항)

-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 안의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³⁾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 공립과학관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학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등록과학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고, 공립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새로이 규정하여 지원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 현재 전국의 공립과학관은 94개소이고, 공립과학관의 설립 지원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공립 소재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이미 하고 있음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과학관의 구분) ① 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①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표 1]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지원사업 현황(2024년)

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공립 소재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소재분야 특화 공립 전문과학관 1개소 건립 지원 － 공고를 통해 선정(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2,500백만원 지방비 2,500백만원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항공우주분야 특화 공립 전문과학관 1개소 건립 지원 － 공고를 통해 선정(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100백만원 지방비 398백만원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노후화된 공립과학관에 대한 리모델링 및 전시콘텐츠 개발 지원 － 공고를 통해 선정(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750백만원 지방비 75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처럼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현행 사업이 이미 시행 중으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전국 등록과학관 현황

총 156 관	구 분	세부내용
	지역별	서울 17, 부산 9, 대구 7, 인천 5, 광주 2, 대전 6, 울산 2, 경기 16, 강원 7, 충북 9, 충남 10, 전북 10, 전남 15, 경북 17, 경남 18, 제주 6
	운영 주체별	국립 13, 공립 94, 사립 49
	분야별	종합 7, 자연사(동·식물) 28, 자연사(해양·어류) 26, 교육/어린이 22, 천문/우주 35, 이공학/전문 37, 역사/민속 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